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81 발의연월일: 2020. 6. 30.

발 의 자:양금희·추경호·전봉민

전주혜 · 김형동 · 김미애

지성호 · 서병수 · 김도읍

윤재옥 · 김기현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 등의 장이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이하'이전지역인재'라 함)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와 같이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이전지역인재를 채용하는 현행 방식에 따르면 다른 지역 출신이지만 이전지역에서 학업을 마친 자는 이전지역인재로 인정되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 학업을 마치고 이전지역으로 돌아와 취업하려는 '이전지역 출신 청년'은 이전지역인재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전지역 출신 청년'들이 지역의 성장동력을 이끌어내고 지역을 위해 일할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있어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마

친 청년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 등록 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이전지역인재로 보아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전지역 출신 우수인재가 재유입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안 제29조의2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본문 중 "사람"을 "사람(이하 "이전지역인재"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를 말한다) 및 중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를 말한다)를 모두 졸업한 청년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 등록 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이전지역인재로 보아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청년의 범위 및 기간 계산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2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
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	역인재 채용 등) ①
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이전공	
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	
한 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	
한다) 또는 고등학교(「초·중등	
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한	
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u>사람</u> 을 이전공공기	사람(이하 "이전지역인
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u>재"라 한다)</u>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	

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제외한다.

<신 설>

② ~ ⑥ (생 략)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초등학교를 말한다) 및 중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를 말한다)를 모두 졸업한 청년으 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 등록 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이전지역인재 로 보아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청년의 범위 및 기간 계산 방 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nderline{3}$ \sim $\underline{7}$ (현행 제2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